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8. 2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8. 19.

다. 상정일자: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8.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김춘옥】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법적 정당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위원회 운영세칙(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 입법예고 : 2024. 7. 11. ~ 7. 31.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법적 정당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에서는 구청장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소극행정 예방·근절, 면책 제도 운영 등이 포함되는 기존 조례에서는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실행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음.
 - 제3조에서는 마포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사항에는 실행계획 수립, 공무원의 규제 개선 요청,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이 포함됨으로써 적극행정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강화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추진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은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함.
- 본 조례안의 개정은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주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장려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점검과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무원들의 행정 수행에 있어 면책 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마련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전부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적극

적인 교육 및 홍보가 지속되어야 하고, 적극행정 실천에 장애가 되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며, 적극행정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의사결정 과정부터 적극적인 업무수행까지의 업무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여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지원 금액을 구분하는 것보다 부정행위에 가담되지 않는 한 소송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 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 정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